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76

발의연월일: 2024. 10. 24.

발 의 자: 박성훈·김대식·이헌승

고동진 • 이상휘 • 박수영

권성동 · 강승규 · 김성원

박충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최초 3 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이후 2년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세액감면의 한도는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한데, 여전히 지방에 위치한 기업이 수도권에 밀려 전문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전문인력근로자 고용에 추가적인 세제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른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 금 제도는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한데,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이를 중복 적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함께 정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주환원촉진 과세

특례'를 도입하여 주주환원금액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지만, 대부분의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배당금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세무상 결손이 매년 발생하는 과세구조상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정부안에 따른 과세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를 계산할 때 전문인력근로자 수에 따라 감면한도가 늘어나도록 하며, 자녀장려금 제도와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주주환원금액 증가분의 일부를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타상장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과 동일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100조의30제2항 삭제, 제100조의33제1항 단서 신설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 중 "청년 상시근로자와"를 "청년 상시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상시근로자 및"으로 한다.

제100조의30제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31제2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100조의30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0조의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33(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6조의8제1항에 따라 연결 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은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2.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일 것
- 3.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 또는 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기주식의 소각만 해당한다)을 통해 주주가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주주환원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 액보다 증가하였을 것
 - 나.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주주환 원금액의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였을 것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제1호에 따른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제2호에 따른 주주환원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주주환원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환원금액의 100분의 1을 한도로 한다.
- 1. 주주환원 증가금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의 평균금액 × 1.05)

- 2. 주주환원 비율: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의 비율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항에 따라		
계산한	×	1
공제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2항제2호에따른
		연결세율(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반영하기 전의 것)

-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 또는 손금산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자녀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0제2항 및 제1 00조의31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00조의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주환원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
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3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	
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	
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	
라 한다)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	2
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	
5백만원[<u>청년 상시근로자와</u>	<u>청년 상시근로자, 대</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	<u> 상시근로자 및</u>
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	
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	
우에는 2천만원]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 등) ①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 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하여 적용할 수 없다.
- ③ (생략)
-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 항의 준용 등) ① (생 략)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 100조의29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제1항 및 제100조의30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다 만,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 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신 설>

능) ((1)	(연형	생과	같음
<u><</u> 삭	フ			

(3) (현행과	(省)	

저	100소	:431()	자녀	상려	古	반단	사
	항의	준용	등)	1	(현	행과	같
	음)						
	2 -						
		<u>제</u>	1항-				

제100조의33(주주환원 촉진을 위 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내국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까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6조의8제1항에 따라 연결납 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은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 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u>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u> <u>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u> <u>자회사</u>
 -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 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2.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일 것

- 3.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 또는 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제1 항 단서에 따른 자기주식의소각만 해당한다)을 통해 주 주가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절에서 "주주환원금액"이라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모두 충족할 것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 원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금액보다 증가하 였을 것
 - 나.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 원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 도의 주주환원금액의 평균 금액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였을 것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제1호에 따른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제2호에 따른 주주 환원 한원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주주환원금액의 100

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주주환원금액의 100분의 1을한도로 한다.

1. 주주환원 증가금액: 다음 계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금액 - (직전 3개 사업연도 의 주주환원금액의 평균금 액 × 1.05)

- 2. 주주환원비율: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 보유
 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의
 비율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항에따라 계산한

공제할금액 ×

법인세법시행령제120조의 22 제2항 제2호에 따른 연결세율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반영하기전의 것)

-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 또는 손금산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방법,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